



후원 제안서(Sponsorship Prospectus) 검토 후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(세금계산서용)와 함께 이메일 (info@iscas2021.org) 또는 팩스(053-742-9007)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[1] 업체명 (*필수 기입 사항)

업체명*					
대표자 성명*					
주소*	(우편번호:)				
전화		팩스		웹사이트	
담당자	성명*	영문	직함*	영문	
		국문		국문	
	전화*		이메일*		
전시분야*					

[2] 전시 후원 패키지

(부가세 별도)

전시 후원 패키지 (a)					
등급	Diamond	Platinum	Gold	Silver	Bronze
금액	□ 2,000만원 이상	□ 1,000만원 이상 2,000만원 미만	□ 500만원 이상 1,000만원 미만	□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	□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

[3] 개별 후원 아이템 (광고 홍보)

(부가세 별도)

개별 후원 아이템 (광고 홍보) (b)		
구분	혜택사항	비용 (원)
SNS 광고 패키지	공식 SNS에 광고 5회 업로드 (컨텐츠 후원사 제작)	□ 3,000,000
등록키트 홍보물 삽입	Registration kit에 광고물 삽입 (후원사 제공)	□ 3,000,000
Proceeding 내 광고	프로시딩 내 광고 삽입	□ 2,000,000
합 계 (b)		

- * 일부 품목의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* 후원 아이템 선정의 경우 후원사에 우선권이 있으며, 최종 아이템 결정은 조직위원회와 상호협의 하에 진행됩니다.
- * 이외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제안이 가능하며, 필요 시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[4] 신청내역

항 목	신청금액	부가세(10%)	합 계	총 계
전시 후원 패키지 (a)	원	원	원	원
개별 후원 아이템 (광고 홍보) (b)	원	원	원	

- * 결제는 은행송금으로 가능합니다. (하나은행 138-910033-79504 예금주: 2021년 국제회로 및 시스템 학술대회)
- * 송금 시 발생하는 모든 은행 수수료는 업체 부담입니다.
- * 참가 취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하며,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
 - 2021년 4월 15일 이전 취소 시: 전체 계약금의 50% 환불 수수료 발생
 - 2021년 5월 1일 이전 취소 시: 전체 계약금의 70% 환불 수수료 발생
 - 2021년 5월 1일 이후 취소 시: 환불 불가
- * 결제방법: 신청서 제출 > 인보이스 수령 > 입금 >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
 - 세금계산서 발행 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합니다.

ISCAS 2021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계약 규정을 수락하고,
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_____ (인)

2021년 국제전기전자공학회 회로 및 시스템 국제학술대회 (ISCAS 2021) 참가 계약 규정

제1조 (용어의 정의)

1. "참가사"라 함은 2021년 국제전기전자공학회 회로 및 시스템 국제학술대회 후원 및 전시 참가를 위하여 소정의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, 조합, 단체 및 지자체 등을 말한다.
2. "대회"라 함은 "국제전기전자공학회 회로 및 시스템 국제학술대회"를 말한다.
3. "조직위원회"라 함은 "국제전기전자공학회 회로 및 시스템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회"를 말한다.

제2조 (계약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)

1. "대회" 후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"참가사"는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"조직위원회"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양 당사자 간의 후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계약금의 경우 별도의 후원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.
2. "대회" 전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"참가사"는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"조직위원회"에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서 제출 후 30일 내 100%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, 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하다.
3. "대회" 기타 후원아이템 및 지면 광고 신청을 하고자 하는 "참가사"는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"조직위원회"에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서 제출 후 30일 내 100%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, 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하다.
4. 모든 비용은 은행송금으로 한화(KRW)만 가능하다.

제3조 (전시면적 배정)

1. "참가사" 중 후원을 신청하였을 경우 후원 등급, 계약금 납입 일자, 신청 일자 순으로 전시면적 우선 추천권을 부여한다.
2. "참가사" 중 전시만 신청하였을 경우 후원부스 위치가 모두 배정된 후 부스 규모, 계약금 납입일자, 신청일자 순으로 우선 추천권을 부여한다.
3. "조직위원회"는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,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"참가사"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4조 (전시장 관리)

1. "참가사"는 본 신청서에 명시한 전시분야에 해당하는 전시품을 전시하고,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2. "참가사"가 본 신청서에 명시한 전시분야와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, 또는 "조직위원회"의 허락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"조직위원회"는 즉시 중지, 철거 및 반출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 하며, "참가사"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3. "참가사"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,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. 만약, 설치기간 동안 시간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"조직위원회"의 허락을 득한 후 시간외 사용료를 "참가사"가 "조직위원회"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 모든 장치업체 선정은 엑스코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.
4. "조직위원회"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, "참가사"는 "조직위원회"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.
5. 리플렛 배포 등 홍보활동은 지정된 장소 또는 부스 내에서만 허용된다.

또한, 홍보활동은 타 전시 부스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, 사전에 사무국으로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

6. "참가사"는 전시장의 바닥, 천장,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형변경을 할 수 없으며, 전시장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"조직위원회"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5조 (해약)

1. "참가사"가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 납입된 금액은 취소 규정에 따른다.
2. 계약사항에 관한 변경 혹은 취소 시 모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, 후원 신청 취소 및 환불은 별도의 후원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준하여 진행된다.
3. 전시후원 패키지, 개별 후원아이템(광고 홍보) 취소 및 환불은 아래의 일정에 따라 처리된다.
 - ▶ 2021년 4월 15일 전 취소 시: 전체 계약금의 50% 환불 수수료 발생
 - ▶ 2021년 4월 15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취소 시: 전체 계약금의 70% 환불 수수료 발생
 - ▶ 2021년 5월 1일 이후 취소 시: 환불 불가

제6조 (취소 또는 변경)

1. "조직위원회"의 귀책 사유로 대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"참가사"에게 반환한다. 다만, 불가항력 및 기타 "조직위원회"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대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. 이 경우 "참가사"는 "조직위원회"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7조 (행사장 내 경비, 위험부담, 도난 및 보험)

1. "조직위원회"는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.
2. "참가사"는 전시기간 및 장치, 철거 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 면적 내 "참가사"의 모든 물품의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.

제8조 (방화규칙)

1. 장치물 및 행사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방염 처리가 되어야 한다.
2. "조직위원회"는 필요에 따라 "참가사"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9조 (보충규제)

1. "조직위원회"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2.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, "참가사"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 (분쟁해결)

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"조직위원회"와 "참가사"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, 의무에 관한 분쟁은 "조직위원회"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.